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6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양부남·김한규·민병덕
박민규·박수현·박정현
복기왕·서영석·정준호
조계원·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

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
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
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
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
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산금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무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재형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위반행위의 제재 및 그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2. 납부지연형 가산금: 부담금, 조정금 등 제1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1. 제재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지연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u>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u> 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 ----- -----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 ----- ----- ----- -----.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u>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설></u>	<u>제4조의2(가산금의 부과)</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재형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위반행위의 제재 및 그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2. 납부지연형 가산금: 부담금, 조정금 등 제1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

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가산금에 더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
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
은 60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1. 제재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지연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금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